# PB상품 공급계약서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이하 "구매자"라 함)과 \_\_(이하 "공급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PB상품 공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주요계약내용

계약명			
공급물품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금액	(₩ VAT 별도)		
대금지급조건	대금지급방식	지급금액	
	일시 <del>불</del>	(₩ VAT 별도)	
납품일정	년 월 일		
납품장소			
검수일정	"구매자"가 "PB상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검수 완료		
지체상금	계약금액(VAT 포함)의 1.5/1000		
첨부문서	별첨. 공급물품 내역서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이에 기명날인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_\_년 \_\_월 \_\_일

 "구매자"
 "공급자"

 상
 호
 :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상
 호
 : \_\_\_

 주
 소
 : \_\_\_

 대표이사
 : 김봉진
 대표이사
 : \_\_\_

# 공급계약 일반조건

#### 제 1 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와 "공급자"간 물품 공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_\_년 \_\_월 \_\_일부터 \_\_년 \_\_월 \_\_일까지 로 한다.

#### 제 3 조 ["PB상품"의 품목과 가격, 위탁범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PB상품"의 수량 및 단가는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의 내용 중 변동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재조정하기로 한다.

품명	<b>수량</b>	<b>단가</b>	<b>총 금액</b>
	(단위: 개)	(단위: 원, VAT별도)	(단위: 원, VAT별도)

#### 제 4 조 [납품]

- ① "공급자"는 별도 협의한 납품일정 내에 "PB상품"을 납품장소에 인도하고 "구매자"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PB상품"의 일부 혹은 전부의 납품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일자를 즉시 알려야 하며, 지체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납품 및 품질관리를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PB상품"을 납품한다.
- ④ "PB상품" 납품 시, "공급자"가 배송 중 발생한 "PB상품" 파손, 분실 등 기타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공급자"가 일체 부담하며, 인수 완료 후 "PB상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 ⑤ "공급자"는 「식품위생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등 "PB상품" 관련 모든 법적 표시사항을 적법하게 기재하였음을 보장한다. 만약, "공급자"가 본항에 따른 법적 표시사항을 미비하거나 오기재함에 따라 "구매자"에게 특정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제 5조 [대금결제]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PB상품"에 대한 인수가 모두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구매자"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VAT 별도) 을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 제 6 조 [인수검사 및 이의신청]

- ① "PB상품"에 대한 인수완료의 조건은 인수증과의 교환 및 "구매자" 인수검사 합격 시로 한다. "구매자"는 인수검사를 "PB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진행 후 "공급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인수검사에 불합격 시 "구매자"는 "PB상품"의 인수완료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PB상품"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PB상품"에 하자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③ 전항에 따라 "공급자"가 "PB상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검수를 실시하여 "공급자"의 재검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재검수 결과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한다. 본 항에 따른 재검수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 ④ 인수검사 합격 요건은 "구매자"가 요청한 내역에 모두 부합한 "PB상품"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납품된 "PB상품"은 사전 제작 및 "구매자"에게 기공유된 최종 샘플 제품과 동등한 품질로서, 실제 "PB상품"을 사용 및 운용함에 있어 문제 또는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제 7 조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등]

- ① "PB상품"이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인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제6조 제4항에 부합하는 "PB상품"을 재납품하고 별도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본 항에 따른 불합격의 사유가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② "구매자"는 인수검사에 불합격한 "PB상품"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수거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PB상품"을 수거하고 일괄 폐기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자"가 본 항에 따라 수거한 "PB상품"을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 및 시중 거래선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인수검사에 불합격한 "PB상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수거 및 폐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임의로 해당 "PB상품"을 일괄 폐기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구매자"가 폐기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제품의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① "PB상품"의 색상, 로고 및 재질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을 통해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의 물품하자로 인한 A/S 및 교환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 본 계약 및 '별첨. 공급물품 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PB상품"을 제작한다.
- ④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PB상품"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양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 9 조 [품질 보증 및 유지보수]

-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제공하는 "PB상품"이 "구매자"와 협의하여 사전 제작한 샘플 제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제품임을 보증한다. 단, "구매자"와 "공급자"간 사전 합의에 따라 "PB상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하여 일부 변경가능 하다.
- ②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PB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PB상품"의 제작 및 납품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본 항에 따른 법령 준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구매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공급자"는 "구매자"가 "PB상품"의 보수와 관련하여 환불 및 교체 등 요청하는 사항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단, "구매자"의 "PB상품"에 대한 관리부주의 또는 사용부주의로 발생된 건은 예외로 한다.
- 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납품한 "PB상품"의 하자에 기인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 10 조 [지식재산권]

- ① "구매자"가 "PB상품" 제작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배달의민족 등과 관련된 디자인, 상표, 저작물 등(이하 "저작물"이라 함)을 제공한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는 "구매자"에게 일체 귀속되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PB상품"의 제작 용도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PB상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구매자" 이외의 업체와 협업, 납품,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PB상품" 제작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동시에 동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및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응 및 해결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지체상금]

-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구매자"에게 "PB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그 지체일수 1일당 해당 "PB상품" 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은 "공급자"의 지체책임이 면제된다.
  - 1. "구매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2. "구매자"와 "공급자"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 제 12 조 [하도급 금지]

-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 1.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 2. 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 3.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 ② "공급자"가 제작할 "PB상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만일 제3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급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제작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해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 13 조 ["PB상품"의 제작, 판매 등 사용 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주문 또는 서면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PB상품"의 제조, 판매, 수출은 물론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 14 조 [계약양도 등의 금지]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 15 조 [비밀유지의무 등]

-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 중에 알게 된 업무상 비밀(계약의 내용, 기타 관련자료 일체)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서면 허락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되다.
-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간의 명예,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 제 16 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①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체납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 2. 영업의 폐지, 양도, 변경, 합병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4.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기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본 계약의 양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없는 일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상호 합의된 계약의 해제, 해지는 본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7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와 그 외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 2.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 3. 제15조[비밀유지의무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수정]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혹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 제 19 조 [관할 법원]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상호간의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 20 조 [기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상관례에 따른다.